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5. 12 선고 2014가단2086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4. 14.

판결 선고 2015. 5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천 1646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19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28㎡ 지상에 설치한 컨테이너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, 위 (가)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D은 1998. 7.경부터 하천부지인 의정부시 C 토지 16467㎡ 중 일부를 점유, 사용하여 오던 중, 2003. 6. 30.경 과거 5년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1,183,580원을 납부하고 의정부시로부터, 위 C 토지 중 자신이 점용한 부분에 대한 측량을 통해 특정한 별지 도면 표시 12, 13, 14, 15, 16, 17, 18, 8, 7, 19, 11,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L"부분 및 "(가)"부분 290㎡에 관하여 점용목적용 대지로, 점용기간을 2003. 6.30.부터 2007. 12. 31.까지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.

나.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점용허가권 및 그 지상의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면서 2007.1. 30.

의정부시로부터 위 점용허가권의 승계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, 2012. 12. 21.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3. 1. 1.부터 2017. 12. 31.까지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(이하 '이 사건 점용허가'라 한다)를 받았으며, 2007년경부터 의정부시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왔다.

다. 피고는 언제부터인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지점에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하여 오다가 현재는 별지 도면 표시 11,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,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ㄱ"부분 및 "(가)"부분 256㎡를 점유, 사용하면서 "ㄱ"부분에는 건축물을 축조하고, "(가)"부분에는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놓았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1호증, 갑 제13,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및 보완감정축탁결과, 변론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의무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"(가)"부분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,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점용허가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·입증을 못하는 한 위 "(가)"부분에 설치한 컨테이너 등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, 원고에게 위 "(가)"부분 토지를 인도할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는, 위 "(가)"부분은 원래 피고가 먼저 점유, 사용하고 있었는데 D이 자신이 점유하던 부분을 넘어 위 "(가)"부분까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점용허가 대상에는 위 "(가)"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, 설사 위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가 의정부시로부터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토지를 점유해온 이상 원고가 피고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의정부시로부터 점용허가 를 받더라도 권리에 저촉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피고는 또한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은 290㎡의 토지 중 어느 부분을 어느 면적만큼 피고가 점유, 사용하고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,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위 측량감정 및 보완감정축척결과에 의하면,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토지 290㎡ 중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"나"부분 162㎡에 불과하고, 나머지 "(가)"부분 128㎡의 토지는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동욱

[별지 2]

감 정 도

